

특집/7월 시행을 앞둔 “분뇨처리법” 모든 것을 알아본다.

돼지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와 허가 절차

김점빈
(일산구청 청소과)

1. 서론

급변하는 다기능적 산업사회와 도시화속에서 농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특히 축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산업사회로 치닫는 동안 점차 환경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환경을 빌미로 성장을 해 온 기업들이 이윤을 환경에 재투자 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소득위주로만 질량의 팽창을 시켰던 우리의 축산업도 예외는 아닌 듯 “축산폐수”라는 예고된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깝게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지역사회까지 또한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당하거나 구속되는 사례로까지 이르러 심각한 직면에 처해있다. 게다가 외국농산물이 밀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관련법규의 강화로 더욱 고심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몇년동안 축산농가의 지도·단속업무를 통한 경험 및 강화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법률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심스럽게 펴을 듣다.

2. 본론

날로 환경문제가 주 관심사가 되면서 환경관련법규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강화된 법률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마음놓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률에(‘96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법률)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강화된 법률의 주요골자를 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강화와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이다. 축사는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시설로 나뉘는데,

첫째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허가대상은 돈사의 경우 축사의 면적 $1,000\text{m}^2$ 이상, 우사·마사의 경우 900m^2 이상이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SS 모두 $150\text{mg}/\ell$ 이하이다. (수질보전특별대책등에서는 돈사의 경우 500m^2 이상, 우·마사의 경우 450m^2 이상이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SS 모두 $50\text{mg}/\ell$ 이하이다) 이와 같이 허가대상 축사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로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구비서류로는

(1)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서

(2)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3)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5)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을 예측한 내역서

(6)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 배출배관도

(7)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

과 처리방법 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은 제외)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처리부서: 시청, 구청(청소과), 군청(환경보호과), 수수료 : 10,000원)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시공업체와 계약후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축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관련 서류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함께 해당관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축사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다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단독으로 설치하여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는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만 해당관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다음은 시행령 강화로('94. 11. 14 대통령령 제14415호) 새로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이 되는 축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돈사: 면적 1,000~ $1,400\text{m}^2$ 미만, 우사·마사 : 면적 900m^2 ~ $1,200\text{m}^2$ 미만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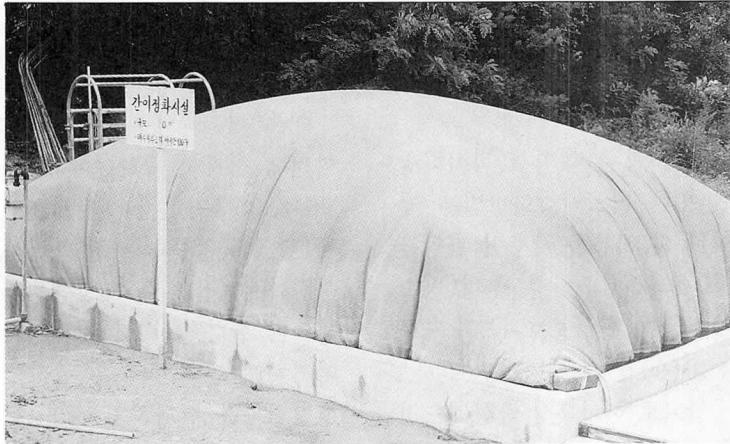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자중 새로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이 되는 축사는 이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96. 6. 30까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차례 안내 공문을 받고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운영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로 행정조치를 당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주는 바이다.

두번째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돈사의 경우 250m^2 이상 $1,000\text{m}^2$ 미만, 우사·마사의 경우 350m^2 이상 900m^2 미만, 닭·오리·양 사육시설은 면적 500m^2 이상이다.(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돈사의 경우 250m^2 이상 500m^2 미만, 우사·마사의 경우 350m^2 이상 450m^2 미만임)

이번에 강화된 법률중 주목 할 만한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종전에는 BOD($1,500\text{mg}/\ell$ 이하)만 적용받았지만, '96. 7. 1부터는 BOD,SS ($500\text{mg}/\ell$ 이하) 둘 다 적용받고 수질기준도 3배나 강화되었다. (특정지역에서는 BOD,SS $350\text{mg}/\ell$ 이하) 신고절차는 구비서



류(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축산폐수정화시설 만 첨부)만 간소화 되었을 뿐 절차는 위에서 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절차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할 지역 및 축사규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신고대상외의 축산폐수배출 시설중 환경정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축사를(돼지사육시설은 면적 70m²이상 250m²미만, 소·말 사

육시설은 면적 120m²이상 350m²미만, 닭·오리·양사육 시설은 면적 150m²이상 500m²미만)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류수 수질이 BOD 1,500mg/l 이하인 시설이나,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고절차는 간이정화조 설치 신고서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위에서 말한 허가, 신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다음은 어떤 방식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하기로 하겠다.

첫째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이며, 구비서류로는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내역서 (2) 가축 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축산폐수의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4) 위탁처리를 증명하는 서류(재활용신고 필증사본 및 위탁처리의 계약기간, 계약량, 계약조건 등이 기재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 면제자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된다.

둘째로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이다. 위 방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위에서 기술한 방법은 시·군내에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가 현실에 맞는 한가지 정화시설 방법을 조심스럽게 소개하기로 한다.

그동안 지도·단속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당장만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선택한 나머지 값싼 정화조 또는 형식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를 많이 보아왔다.

또 관할 유관기관에서 정화조 판매업체에서의 홍보물 및 말에 현혹되어 축산농가의 실

제 상황은 외면한 채 마구잡이로 설치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속 축산업을 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에 앞으로 증설을 할 것인지 등등 확신이 서면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규는 날로 강화되는데 어떤 정화조를 설치해야 할까.

먼저 우리 축산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시설을 살펴보자.

대부분 저장액비화 방식의(콘크리트 구조물) 저장탱크 또는 FRP,PE제품의 단순히 침전만 시킨 후 방류될 수 있는 저장탱크가 있다. 물론 이 제품의 주 목적은 방류시키는데 있지 않고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제품인데 주변에 축산폐수를 퇴비,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 못하니까 방류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설정이다. 따라서 지금 소개하는 방법은 기존에 위에서 말한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나, 새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고자 한다.

접촉산화방식은 폐수에 산소를 공급하여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시켜 미생물로 하여금 폐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효율도 탁월하다. '95년도에 우리 고양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는데 여러번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강화된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처리되었다.

우려한 점은 다른 기관에서도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다. 모든 제품은 그 방법 나름대로 관리를 100%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에 전념해야지 정화시설에만 매달릴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도 쉬울 뿐 아니라 처리효율도 좋은 정화조만이 우리 농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방법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연계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법률이 강화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너무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심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치비용이 다소 많이 든다는 것인데 신고대상은 700만 원~2천만원, 허가대상은 2천만원~4천만원 정도이다. 농가에 기존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용자, 보조금에 관하여 언급하면, 해당관청 산업과(축정계) 또는 농촌지도소 등에서 연초에 용자 및 보조금에 관한 계획이 있으니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환경을 외면시 하면 이웃 주민 및 행정 당국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다.

행정절차 다소 낯설고 어렵더라도 해당관청 담당자에 문의하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줄 것이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가 스스로 판단하고 시행하면 계속 시행착오만 거듭될 뿐이니 꼭 전문가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더이상 축산폐수정화시설에 신경쓰지 않고 축산업에 전념하길 바라며, 축산농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